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수 석전 문위원

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박종규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31일

○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02일

3. 개정이유

○ 상위법령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용어 변경 (안 제5조)

- "각급 학교" → "학교"
- "보육시설" → "어린이집"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로 변경하기 위한 것임.
- 안 제5조에서,

기존 조례에 사용된 "각급 학교"를 「초·중등 교육법」제2조에 규정된 "학교"로 변경하고,

"보육시설"은 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에 규정된 "어린이집" 으로 각각 변경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